방화관리 규정

제정	:	1999.	10.	1.
개정	:	2011.	6.	30.
개정	:	2015.	5.	13.
개정	:	2019.	6.	18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"본교" 라 한다)에서의 합리적 방화관리를 통해 화재예방 및 화재로 인한 각종 재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나아가 본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의 전 교직원 및 교내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- 제3조(조직) ① 총장은 본교의 방화관리에 관한 총책임자가 되어 방화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 - ② 총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 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.
- **제4조(소방안전관리자 자격)**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•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2항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제5조(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)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

-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•운영•교육
- ③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•관리
- ④ 소방훈련 및 교육
- ⑤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•관리
- ⑥ 화기 취급의 감독
-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

제 3 장 교육 및 훈련

제6조(교육 및 훈련) ① 본교의 교직원은 소방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.

- ②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,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화재예방상 교육 및 훈련에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부로부터 초빙하여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관리 총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자위소방대를 동원 소방훈련을 실시 할수 있다.

제7조(자위소방대 편성) ① 화재 및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조직하고 본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편성, 운영한다.

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한다.

제8조(소방훈련 검토) 소방안전관리자는 각종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후 그 내용면에서 시 정을 요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보완, 개선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체점검) 소방안전관리자는 본교의 소방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점검사항을 자체점검 기록 부에 기재하여 이를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과하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정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